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976

발의연월일: 2023. 5. 12.

발 의 자:정희용・구자근・최춘식

노용호 • 태영호 • 지성호

김도읍 • 조수진 • 임이자

장동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이하 "농어가"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가뭄·홍수·태풍·해일·이상수온 등의 자연현상으로 농업재해나 어업재해(이하 "농어업재해"라 함)를 입은 농어가에 그 피해 사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와 지원을 하되, 동일 목적물에 대한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어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 「농어업재해보험법」이나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수령 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농어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태풍·호우 등의 농어업재해로 재해보험금(이하 "재해보험금"이라 함)을 지급받은 경우 현행법 지원 규정에 따른 종묘대, 비료대, 농약대, 입식비, 시설비 등의 재해복구비 (이하 "재해복구비"라 함)를 지원받을 수 없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해보험은 수확량 감소 등으로 인한 소득 하락을 보전하는 개념이므로 이에 따른 재해보험금은 최소한 생계구호를 위한 재해복구비보다 많아야 함에도, 최근 재해복구비의 지원 규모 확대로 재해복구비가 재해보험금보다 높을 수 있어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우려와 함께 재해보험 가입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법」이나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농어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명확히 하 는 한편, 이 법에 따른 농어가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법령의 지원규정 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금 지급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나아가 농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법률 제 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농어업재해보험법」, 「풍수해보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이 다른 법령의 지원규정에따라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액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			
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			
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농어업재해보험법」,		
<u>기본법」</u> , 「야생생물 보호 및	「풍수해보험법」, 「재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안전관리 기본법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			
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			
에서 <u>제외한다</u> .	제외하되, 이 법에 따른 지		
	원금이 다른 법령의 지원규정		
	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		
	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지		
	<u>원할 수 있다</u>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